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892호 2024. 6. 13.(목)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024-10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1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2024-840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2
- 사천시 공고 제2024-841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3
- 사천시 공고 제2024-85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4
- 사천시 공고 제2024-883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5
- 사천시 공고 제2024-886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사천시 공고 제2024-887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3

회 람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사천시 고시 제2024-10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사천시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사천시장(재난안전과)		
	대표자 (성 명)	사천시장	주소	사천시 시청로 77
소하천명		고읍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정동면 예수리 544번지 외 154필지		
	면적	34,24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로부터~ '27.12.31까지		
	목적 및 사유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4-840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사천시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대표자 (성 명)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215, 1층
소하천명		신촌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용현면 온정리 836-8번지		
	면적	34.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영구		
	목적 및 사유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배수암거 유출부 설치)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4-841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사천시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사천시장(재난안전과)		
	대표자 (성 명)	사천시장	주소	사천시 시청로 77
소하천명		동계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정동면 화암리 969-8번지		
	면적	1,655㎡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영구		
	목적 및 사유	고읍·선인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고지배수로 신설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사천시 공고 제 2024-851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2항에 의한 소유자의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동법 제24조의2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4. 6. 13.

사 천 시 장

- 공 고 명 칭: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공 고 기 간: 2024. 6. 13. ~ 2024. 6. 28.(15일간)
- 공 고 대 상

신청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일자	운행정지 사유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65보8946	스파크 1.0 DOHC	주*량	2024. 6. 3.	소유자의 차량을 가져간 이가 차량 이전을 하지 않아 운행정지를 신청함.

4. 공 고 내 용

1)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1항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 제2항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이 있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을 공고하오니, 차량운행자께서는 해당 자동차가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고 운행정지명령 해제 요청을 하신 후에 자동차를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제7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동법 제82조(벌칙) 제2의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 자동차 사용자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함.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천시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팀(055-831-33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사천시 공고 제2024-883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13일

사 천 시 장

1. 목 적 : 저수지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농경지 등 재해를 보호하기 위함
2.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3. 공고방법 : 사천시청 홈페이지, 공보 게재 및 지역일간지
4.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대상지

저수지명	위 치	제 원			관리자	지정사유	비고
		총저수량 (천㎡)	길이 (m)	높이 (m)			
신복상저수지	사천시 용현면 신복리 898-2번지 일원	3.0	32.0	8.2	사천시청	D급 (정밀안전진단)	
신평곡저수지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774번지 일원	16.2	45.0	9.0			

5. 의견제출 방법

가.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및 우편 :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사천시청 건설과)
- 전화 : 055)831-3278, 팩스 : 055)831-6035

나.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사천시 공고 제2024-886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신설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2조 및 제4조)
- 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안 제6조)
(현행) 최대 100억원 → (개정) 최대 200억원
- 다.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 라. 공공기관 경남항공국가산단내 산업용지 매입 시 지원 근거 신설(안 제10조)
- 마.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20조~제23조의3)
- 바. 이중지원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56,
FAX: 831-6045)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을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로, “국가균형발전 및”을 “지역균형발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을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외”를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투자유치촉진지역

제4조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100억원”을 “2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중 “150명”을 “300명”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을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임대용지 공급)”을 “(임대용지 공급·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위원장을 포함한”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위원의 제척 등)”을“(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23조제2항 전단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있다”를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제23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1. 제10조의2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3. “국가혁신융복합단지”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p> <p>4.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육성을 위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대상 산업을 말한다.</p> <p>5. ~ 11.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2조(정의)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 ----- 지역균형발전 및 ----- -----.</p> <p>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p> <p>5. ~ 11. (현행과 같음)</p> <p>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p> <p>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p>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외 소재 사업장의 관

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
----- 경상남도 외(이하 “도

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략)

<신설>

2. (생략)

②·③ (생략)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

외”라 한다) -----

-----.

1. (현행과 같음)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신설>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

----- 200억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투자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지원금 추가지원) ---

----- 300명 -----

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임대용지 공급) (생략)

<신설>

<신설>

----.

제9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용지 공급·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산업용지를 매입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제1항의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운영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2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제20조(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

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사천시의회 의원, 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학계·금융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삭 제>

제22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 임기만료 외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
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
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
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
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
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
우

② -----
-- 사람은 ----- 심의·
의결을 -----

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 설>

-----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 제>

제23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 설>

<신 설>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

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
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
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
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
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용자
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
만, 제10조의2에 따른 사천시

제28조(이중지원 금지) 이 조례에
서 정한 보조금 또는 용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

전략산업 특별지원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도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1. 제10조의2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기업이 제19조제1항 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비용자 지원을 받는 경우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사천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예산액 반영

나. 관련 조문

- 조례안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 조례안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 조례안 제6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 조례안 제10조(임대용지 공급·지원)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618	10	192	102	212	102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318	10	2	102	102	102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100	0	50	0	50	0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200	0	140	0	60	0

-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경우 투자유치의 유동적인 상황과 규모에 따라 지원액 등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재원별 부담은 도비 60%, 시비 40%로 계상하여 적용
- 기업투자촉진지구는 현재 지정된 곳이 없으나 경남항공 국가산단이 지정될 경우 발생할 금액을 산정(지정절차에 따른 시기를 감안하여 2026년부터 산정)하였으며, 지구 지정에 상관없는 공공기관의 부지매입에 따른 보조금은 산정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지원 실적이 없었고 앞으로 신청건수에 대한 예측이 어려움으로 2025년부터 격년으로 1개소 신청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가장 작은 구간을 적용함.
- 이번에 신설된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은 현재 진행 중인 1개 업체 기준으로 최고 한도액으로 작성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억원)

구분 \ 연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세출	소계(a)	618	10	192	102	212	102
	일반회계	618	10	192	102	212	102
세입	소계(b)	618	10	192	102	212	102
	보조금	364.8	0	115.2	61.2	127.2	61.2
	지방세	253.2	10	76.8	40.8	84.8	40.8

3. 부대의견

- 보조금 지원은 투자유치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고 투자규모별 지원기준과 한도액 차이가 있어 지원금별로 1개소를 최소 또는 최대 지원으로 비용추계하였음.

작성자: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억 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재원조달		618	10	192	102	212	102
의존 재원	소 계	364.8	0	115.2	61.2	127.2	61.2
	보조금	364.8	0	115.2	61.2	127.2	61.2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253.2	10	76.8	40.8	84.8	40.8
	지방세	253.2	10	76.8	40.8	84.8	40.8
	세외수입	0	0	0	0	0	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추가경정예산 및 202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예정

3. 부대의견: 해당없음

4. 협의사항: 해당없음

작성자: 투자유치산단과장 양재규

관 련 법 규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생활권”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문화·복지·주거·안전·환경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광역시의 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인근 시·군·구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6. “지역특화산업”이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산업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7. “초광역권”이란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서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을 말한다.

8. “초광역권산업”이란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초광역권의 협력산업으로서 제14조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한다.

9. “성장촉진지역”이란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로, 상수도 등의 지역사회기반시설의 구축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소득, 인구,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특수상황지역”이란 남북의 분단 상황 또는 지리적·사회적 요인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이게 되어 일정기간 동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나. 「섬 발전 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개발대상섬. 다만, 성장촉진지역에 해당하는 섬은 제외한다.

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지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1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

별시는 제외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포함한다)·군·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3.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23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5.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서 제27조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6.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를 말한다.

17.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8. “통합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24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학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지역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 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업의 유치·집적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8. “민간개발자”란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개인이나 「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9. “조성계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10. “지원시설”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관리·운영 및 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안팎의 시설을 말한다.

11. “관광특구”란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안내 체계 및 홍보 등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11의2.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1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토론회·전시회·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준비·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

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사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사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

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 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모바일문화콘텐츠·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자.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활용하여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으로서 의상, 조형물, 장식용품, 소품 및 생활용품 등과 관련된 산업

차.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 다만,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과 관련된 산업은 제외한다.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각 문화산업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2. “문화상품”이란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내재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문화콘텐츠”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임대전용산업단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산업단지의 일부를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전용산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전용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국고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자금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하는 자금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을 더하여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2. “지방투자촉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및 보조금 지원·관리, 보조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에 의해 정해진 기업의 투자사업을 말한다.

3. 삭제

4. "보조금신청일"이란 제17조제3항의 보조금 신청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말한다.

5. "사업실적평가점수"란 별표 7의 평가기준 중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부채비율,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기업 신용등급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6. '사업이행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제21조에 따라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7. 이 고시에서 '착공신고일'이란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교부되는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을 의미한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도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나. 증설기업: 도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2.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다.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다.

6.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균형발전대상지역”이란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을 말한다.

8. “전략산업”이란 「경상남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다.

9.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 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날

10.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2.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3.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4.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5.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체화된 콘텐츠를 말한다.

16.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

조금 지원을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7.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외 소재 사업장의 도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제23조의 경상남도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지방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설비보조금,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과 지원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19.1.3.>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업투자촉진지구의 분양이 완료된 경우 및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도내 이전기업, 도내 신·증설투자기업, 도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투자기업의 인근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0조에 따라 기업명을 딴 명예도로명을 부여하도록 시장·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3(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도지사는 도내에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고용보조금의 경우에는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에는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투자촉진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2.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9조제1항제3호의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사천시 공고 제2024-887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사 천 시 장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확대 개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시고용인원 인정범위에 대한 기준 완화(안 제2조제4호)
- 나.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에 대한 투자규모별 별도 규정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4조, 별표 7)
- 다. 공공기관이 항공국가산단내 부지매입 시 입지보조금 지원범위 신설 (안 제5조)
- 라.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한도액 조정(안 제5조~제9조)
 - (현행) 최대 14억원 → (개정) 최대 90억원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마. 기업투자촉진지구 설비보조금 신청기한 변경(안 제8조)

- (현행) 사업개시일 → (개정) 착공신고일

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액 조정 및 평가항목 개정

(안 제11조, 별표 2의2, 별표 2의3)

- (현행) 설비투자 최대 100억원 → (개정) 설비투자·부지매입 각 100억원

- 설비투자 보조금의 신청기한(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신설

-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구체화

사.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별표 8)

- 지원기준, 지원한도액에 대한 상세 기준 명시 등

- 대규모 투자의 경우 최대 200억원 지원 등 별도기준 마련

아. 부지매입비 무이자 용자사업(기금)한도액 조정(안 제19조)

- (현행) 50억원 → (개정) 100억원

자. 투자유치 협약 체결 전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일부 인정범위 등 신설(안 제22조의2제5항)

차. 상위법령 개정 및 지원대상의 명확화를 위한 자구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투자유치산단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3456, FAX: 831-6045)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사천시 규칙 제 호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제2조제5호 중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6호 중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한다.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외”를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본문 중 “도내”를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제1항 중 “50퍼센트”를 “70퍼센트”로, “5억원”을 “2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은 부지 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의 50퍼센트는 부지매입 완료한 후 지원하고 나머지 50퍼센트는 임대 의무기간동안 매년 균분 지원한다.

제6조제1항 중 “3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 가·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3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업개시일”을 “착공신고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 중 “2퍼센트”를 “10퍼센트”로, “2억원”을 “10억원”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제11조제1항제1호 중 “500억원”을 “1,000억원”으로, “150명”을 “2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퍼센트”를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로, “100억원”을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 인원이 모두”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달) 상시고용인원이”로 한다.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과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 부터 1년 이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조례에 따른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 제목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을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각각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892호

제17조제5항 중 “1개월”을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로 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을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 본문 중 “50점”을 “60점”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창업기업,”을 “창업기업 또는”으로, “신설하는”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장(제21조)을 삭제한다.

제22조의2제3항 전단 중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와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투자유치 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의2] <개정 2024. . .>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3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6}$$

$$*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손익}}{\text{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text{최근 2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직전1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 (\text{직전2년도 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3}$$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매출액증가율} \times 1)]}{3}$$

$$* \text{당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text{전기 매출액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점 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 \text{최근 3년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times 2)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times 1)]}{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text{당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 총자산} - \text{전기말 총자산}}{\text{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text{전기 총자산증가율} = \frac{\text{전기말 총자산} - \text{전전기말 총자산}}{\text{전전기말 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4.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점 수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주업종 : 그 외 업종	
50% 미만	30% 미만	5
50% 이상 ~ 10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4
100% 이상 ~ 150% 미만	60% 이상 ~ 90% 미만	3
150% 이상 ~ 200% 미만	90% 이상 ~ 120% 미만	2
200% 초과	120% 초과	1

$$* \text{최근 결산일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1점 부여

5. 차입금 의존도

평가척도	점수
15% 미만	5
15% 이상 ~ 20% 미만	4
20% 이상 ~ 25% 미만	3
25% 이상 ~ 30% 미만	2
30% 초과	1

* 최근 결산일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전환사채 등 신종사채+장기차입금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1점 부여

6.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신용등급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2점 부여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5	20명 이상 30명 미만	2
40명 이상 5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1
30명 이상 40명 미만	3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	100억원당 1점

총 투자금액 (A)+(B)	부지매입비(A)	설비투자금액(B)	
		건설투자금액(C)	기계장비구입비용(D)

9. 투자자금 조달

평 가 척 도	점수
90% 이상	5
70% 이상 ~ 90% 미만	4
50% 이상 ~ 70% 미만	3
30% 이상 ~ 50% 미만	2
30% 미만	1

$$* \text{투자자금조달} = \frac{\text{투자금액 중 자기자본조달금액 총계}}{\text{신규투자금액}} \times 100$$

10.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 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로부터 기산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5명당 0.5점

12. 경남도 생산유발계수

평 가 척 도	점수
1.45 이상	5
1.35 이상 ~ 1.45 미만	4
1.2 이상 ~ 1.35 미만	3
1.1 이상 ~ 1.2 미만	2
1.1 미만	1

* 「경상남도 지역투입산출분석(RIO) 적합모형 도출과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경남연구원, 2020)」 중 (표 3-29) '2018 경남도 투입산출계수(중간투입률, 중간수소율) 및 생산유발계수'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13.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 산업유형

평가척도	점수
A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大)	5
B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大) D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小)	3
C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小)	1

* 「경상남도 지역투입산출분석(RIO) 적합모형 도출과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경남연구원, 2020)」 중 (표 3-30)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의 산업유형

14. 가점요소(최대 4점)

평가척도	점수(최대 4점)
지역특성화업종 투자	2점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	2점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	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2점
ESG인증기업	2점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	2점
수소전문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별표 1(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확인유형: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로 확인
 - * ESG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ESG기업 인증서」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확인서」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확인서」로 확인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통보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확인서류」로 확인
-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소재부품장비기업·수소전문기업·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점 중복 불가

[별표 2의3] <개정 2024. .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구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1	(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50억원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2.5%	부지 매입비 ×2.5%	
	2	(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70억원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2.5%	부지 매입비 ×2.5%	
	3	(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100억원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2.5%	부지 매입비 ×2.5%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7] <신설 2024. . .>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기준(투자규모별 한도액)(제4조 관련)

(단위 : 억원)

구분	지원기준	입지 보조금	고용 보조금	교육 훈련 보조금	설비 보조금	이전 보조금	비고
기업 투자 촉진 지구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0	3	2	2	2	투자금액 5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15	10	5	10	5	투자금액 1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20	15	7	20	7	투자금액 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 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30	20	10	30	10	

※ 지원범위 등은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따름

[별표 8] <신설 2024. . .>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 한도액(억원) *도비·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 산업 대규모 투자 지원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20	투자금액 1,2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2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40명이상		140	투자금액 1,4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4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160	투자금액 1,6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6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50명이상		180	투자금액 1,800억원 미만 해당
	투자금액이 1,800억 원 이상 & 상시고용인원 60명이상	투자금액의 10%	2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 다. (생략)</p> <p>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p> <p>가. ~ 다. (현행과 같음)</p> <p>5.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p>

6. ~ 10. (생략)

11. ~ 13. 삭제

1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8의2호, 같은 법 제
17조부터 제17조의3에 따
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역

나. (생략)

15. (생략)

16.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
다)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17. (생략)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생략)

②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다) ---.

6. ~ 10. (현행과 같음)

14. -----

-----.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
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
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16. ----- 한국표준산업
분류-----

-----.

17. (현행과 같음)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경상남도 외(이하 “도외”라
한다) -----

2. (생략)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 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신설>

제5조(입지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

2. (현행과 같음)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경상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 . -----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 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7과 같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

----- 70퍼센트 -----
----- 20억원 -----

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제6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4
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
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
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3억원의 한도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
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의 한도

-----.

② 시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은 부지매입비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액의 50퍼센트는 부지매입 완료
한 후 지원하고 나머지 50퍼센
트는 임대 의무기간동안 매년 균
분 지원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6조(고용보조금) ① -----

----- 20억원 -----
-----.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 10억원 -----

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생략)

제8조(설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사업개시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

② -----

----- 국가·지방자치단체 -----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설비보조금) ① -----

----- 10퍼
센트 ----- 30억원-----
-----.
----- 착공신고일-----

-----.

② (생략)

제9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가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생략)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5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 4.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이전보조금) ① -----

----- 10퍼센트 -----
----- 10억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

1. ----- 1,000억원 -----

----- 200명 -----

2. ~ 4. (현행과 같음)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략)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이 모두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② -----
-----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③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④ (현행과 같음)

⑤ -----
--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달) 상시고용인원이 -----

--.

⑥ (생략)

<신설>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시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10

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조례에 따

른 사천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 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천시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업종은 별표 6과 같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른 국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 3. (생략)

③ ~ ⑥ (생략)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 ④ (생략)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2조(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 산업 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

② -----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

-----.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다만, 국내에서 연속한 사업영위 기간이 3년 이

제18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60점-----

----- <단서 삭제>

상일 경우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다.

② ~ ④ (생략)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조
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
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
기업, 도외 사업장의 관내 이
전,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
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
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
원이 가능하다.

2. (생략)

3. 용자 한도액은 5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 ⑤ (생략)

제5장 투자유치위원회 운영

제21조(투자유치위원회) ① 위
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기금융자 절차 등) ① ---

-----.

1. -----
----- 창업
기업 또는 -----
----- 신설하거
나 증설하는 -----
-----.

2. (현행과 같음)

3. ----- 100억원-----

-----.

②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신 설>

⑤ 투자유치 협약은 보조금신청 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다만,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 설>

⑥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 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 · 구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의2] <신설 2022.12.29.>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 및 제17조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h>평가척도</th><th>점수</th></tr> <tr><td>20% 이상</td><td>5</td></tr> <tr><td>15% 이상 ~ 20% 미만</td><td>4</td></tr> <tr><td>10% 이상 ~ 15% 미만</td><td>3</td></tr> <tr><td>5% 이상 ~ 10% 미만</td><td>2</td></tr> <tr><td>5% 미만</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left[\frac{\text{최근 3년 평균 매출액} \times 3}{\text{최근 3년 평균 매출액} \times 3 + \text{최근 2년 평균 매출액} \times 2 + \text{최근 1년 매출액}} \right] \times 100$ * 매출액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실적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left[\frac{\text{최근 1년 매출액} + \text{최근 2년 매출액}}{2} \right] \times 100$ * 실적 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p> <p>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h>평가척도</th><th>점수</th></tr> <tr><td>20% 이상</td><td>5</td></tr> <tr><td>15% 이상 ~ 20% 미만</td><td>4</td></tr> <tr><td>10% 이상 ~ 15% 미만</td><td>3</td></tr> <tr><td>5% 이상 ~ 10% 미만</td><td>2</td></tr> <tr><td>5% 미만</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right] \div 3$ * 당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실적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실적 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p> <p>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h>평가척도</th><th>점수</th></tr> <tr><td>20% 이상</td><td>5</td></tr> <tr><td>15% 이상 ~ 20% 미만</td><td>4</td></tr> <tr><td>10% 이상 ~ 15% 미만</td><td>3</td></tr> <tr><td>5% 이상 ~ 10% 미만</td><td>2</td></tr> <tr><td>5% 미만</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총자산 증가율} \times 2}{\text{전기 총자산 증가율} \times 1} \right] \div 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당기 말 총자산} - \text{전기 말 총자산}}{\text{전기 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전기 말 총자산} - \text{전전기 말 총자산}}{\text{전전기 말 총자산}} \times 100$ * 실적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 증가율(당기 총자산 증가율)로 산정 * 실적 1년 이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p> <p>4. 부채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평가척도</th> <th rowspan="2">점수</th> </tr> <tr> <th>주업종 : 제조업</th> <th>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th> </tr> <tr><td>30% 미만</td><td>50% 미만</td><td>5</td></tr> <tr><td>30% 이상 ~ 60% 미만</td><td>50% 이상 ~ 100% 미만</td><td>4</td></tr> <tr><td>60% 이상 ~ 90% 미만</td><td>100% 이상 ~ 150% 미만</td><td>3</td></tr> <tr><td>90% 이상 ~ 120% 미만</td><td>150% 이상 ~ 200% 미만</td><td>2</td></tr> <tr><td>120% 초과</td><td>200% 초과</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결산일 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p>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주업종 :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p>[별표 2의2] <개정 2024 . . .>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제11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h>평가척도</th><th>점수</th></tr> <tr><td>20% 이상</td><td>5</td></tr> <tr><td>15% 이상 ~ 20% 미만</td><td>4</td></tr> <tr><td>10% 이상 ~ 15% 미만</td><td>3</td></tr> <tr><td>5% 이상 ~ 10% 미만</td><td>2</td></tr> <tr><td>5% 미만</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left[\frac{\text{최근 3년 평균 매출액} \times 3}{\text{최근 3년 평균 매출액} \times 3 + \text{최근 2년 평균 매출액} \times 2 + \text{최근 1년 매출액}} \right] \times 100$ * 매출액 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 실적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 = $\left[\frac{\text{최근 1년 매출액} + \text{최근 2년 매출액}}{2} \right] \times 100$ * 실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p> <p>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h>평가척도</th><th>점수</th></tr> <tr><td>20% 이상</td><td>5</td></tr> <tr><td>15% 이상 ~ 20% 미만</td><td>4</td></tr> <tr><td>10% 이상 ~ 15% 미만</td><td>3</td></tr> <tr><td>5% 이상 ~ 10% 미만</td><td>2</td></tr> <tr><td>5% 미만</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right] \div 3$ * 당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당기 매출액} - \text{전기 매출액}}{\text{전기 매출액}} \times 100$ * 전기 매출액 증가율 = $\frac{\text{전기 매출액} - \text{전전기 매출액}}{\text{전전기 매출액}} \times 100$ * 실적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실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p> <p>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th>평가척도</th><th>점수</th></tr> <tr><td>20% 이상</td><td>5</td></tr> <tr><td>15% 이상 ~ 20% 미만</td><td>4</td></tr> <tr><td>10% 이상 ~ 15% 미만</td><td>3</td></tr> <tr><td>5% 이상 ~ 10% 미만</td><td>2</td></tr> <tr><td>5% 미만</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 \left[\frac{\text{당기 총자산 증가율} \times 2}{\text{전기 총자산 증가율} \times 1} \right] \div 3$ * 총자산 : 부채와 자본총계 * 당기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당기 말 총자산} - \text{전기 말 총자산}}{\text{전기 말 총자산}} \times 100$ * 전기 총자산 증가율 = $\frac{\text{전기 말 총자산} - \text{전전기 말 총자산}}{\text{전전기 말 총자산}} \times 100$ * 실적 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 증가율(당기 총자산 증가율)로 산정 * 실적 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p> <p>4. 부채비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평가척도</th> <th rowspan="2">점수</th> </tr> <tr> <th>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th> <th>주업종 : 그 외 업종</th> </tr> <tr><td>50% 미만</td><td>30% 미만</td><td>5</td></tr> <tr><td>50% 이상 ~ 100% 미만</td><td>30% 이상 ~ 60% 미만</td><td>4</td></tr> <tr><td>100% 이상 ~ 150% 미만</td><td>60% 이상 ~ 90% 미만</td><td>3</td></tr> <tr><td>150% 이상 ~ 200% 미만</td><td>90% 이상 ~ 120% 미만</td><td>2</td></tr> <tr><td>200% 초과</td><td>120% 초과</td><td>1</td></tr> </table> <p style="font-size: small;"> $\text{최근 결산일 기준 부채비율} = \frac{\text{부채총계}}{\text{자본총계}} \times 100$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시 서류상 제출한 표준자무제표(표준자무제표등일)로 확인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 내역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1점 부여 </p>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주업종 : 그 외 업종	50% 미만	30% 미만	5	50% 이상 ~ 10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4	100% 이상 ~ 150% 미만	60% 이상 ~ 90% 미만	3	150% 이상 ~ 200% 미만	90% 이상 ~ 120% 미만	2	200% 초과	120% 초과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주업종 : 제조업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30% 미만	50% 미만	5																																																																																																															
30% 이상 ~ 60% 미만	50% 이상 ~ 100% 미만	4																																																																																																															
60% 이상 ~ 90% 미만	100% 이상 ~ 150% 미만	3																																																																																																															
90% 이상 ~ 120% 미만	150% 이상 ~ 200% 미만	2																																																																																																															
120% 초과	200% 초과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20% 이상	5																																																																																																																
15% 이상 ~ 20% 미만	4																																																																																																																
10% 이상 ~ 15% 미만	3																																																																																																																
5% 이상 ~ 10% 미만	2																																																																																																																
5% 미만	1																																																																																																																
평가척도		점수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주업종 : 그 외 업종																																																																																																																
50% 미만	30% 미만	5																																																																																																															
50% 이상 ~ 100% 미만	30% 이상 ~ 60% 미만	4																																																																																																															
100% 이상 ~ 150% 미만	60% 이상 ~ 90% 미만	3																																																																																																															
150% 이상 ~ 200% 미만	90% 이상 ~ 120% 미만	2																																																																																																															
200% 초과	120% 초과	1																																																																																																															

현 행

5. 차입금 의존도

평가척도	점수
15% 미만	10
15% 이상 ~ 20% 미만	8
20% 이상 ~ 25% 미만	6
25% 이상 ~ 30% 미만	4
30% 초과	2

· 최근 결산일 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 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단기차입금 + 유동성경기부채 + 유동리스부채 + 상환 + 장기차입금 + 비유동리스부채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자무계표(표준자무계표증명서)로 확인

6.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10	20명 이상 30명 미만	4
40명 이상 50명 미만	8	10명 이상 20명 미만	2
30명 이상 40명 미만	6		

7.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 등급 불명이 불가불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증금 신청 시 유류기밀 내 「공공기관대출을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확인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설비투자금액	5억원당 1점

9. 사업성 분석

사업성	점수	사업성	점수
20% < IRR	5	5% < IRR ≤ 10%	2
15% < IRR ≤ 20%	4	IRR ≤ 5%	1
10% < IRR ≤ 15%	3		

※ 사업총상차원부에서 공정한 사업성분석 산출 프로그램으로 산출

10. 투자기간

허정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수	허정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각종신고필증 상 각종인증필증까지의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직간접 리우일정의 경우차량 각종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신청서 상 각종필증까지의 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신규 고용하면 5점 가점

12. 권역발전허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지침기준(산업총상차원부고시), 별표 5 (보증금 지원보좌 및 지역유보) 적용

개 정 안

5. 차입금 의존도

평가척도	점수
15% 미만	5
15% 이상 ~ 20% 미만	4
20% 이상 ~ 25% 미만	3
25% 이상 ~ 30% 미만	2
30% 초과	1

· 최근 결산일 기준 차입금의존도 = $\frac{\text{차입금 총계}}{\text{자산총계}} \times 100$
 * 단기차입금 + 유동성경기부채 + 상환 + 건원사채 중 신용사채 + 장기차입금
 ※ 법인세 과세표준 확인신고서 내역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1점 부여

6.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10
BBB- 이상	3, 4 등급	8
BB- 이상	5 등급	6
B0 이상	6 등급	4
B0 미만	7등급 이하	2

※ 기업신용등급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2점 부여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5	20명 이상 30명 미만	2
40명 이상 50명 미만	4	10명 이상 20명 미만	1
30명 이상 40명 미만	3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	100억원당 1점

중 투자금액 (A)+(B)	부지매입비(A)	설비투자금액(B)	
		건설투자금액(C)	기계장비구입비용(D)

9. 투자자금 조달

평가척도	점수
90% 이상	5
70% 이상 ~ 90% 미만	4
50% 이상 ~ 70% 미만	3
30% 이상 ~ 50% 미만	2
30% 미만	1

※ 투자자금조달 = $\frac{\text{투자금액 중 자기자본의 일액 총계}}{\text{투자총액}} \times 100$

10. 투자기간

허정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수	허정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점수
1년 이내	5	2.5년 이내	2
1.5년 이내	4	3년 이내	1
2년 이내	3		

※ 각종신고필증 상 각종인증필증까지의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직간접 리우일정의 경우차량 각종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신청서 상 각종필증까지의 기간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점수(20점 만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5명당 0.5점

12. 경남도 생산유발계수

평가척도	점수
1.45 이상	5
1.35 이상 ~ 1.45 미만	4
1.2 이상 ~ 1.35 미만	3
1.1 이상 ~ 1.2 미만	2
1.1 미만	1

· 생산유발 계수(생산유발계수)의 적용대상 : 경상남도 지역산업연계형 사업(경남연구청, 2020), 동(표 3-29) 2018 연차별 투입산출계수(경남연구청, 2020) 및 산업유발계수 산출방법서

13. 경남도 권·후방 연권효과 산업유형

평가척도	점수
A형(전방연쇄효과 대, 후방연쇄효과 대)	5
B형(전방연쇄효과 대, 후방연쇄효과 대)	3
D형(전방연쇄효과 대, 후방연쇄효과 대)	3
C형(전방연쇄효과 대, 후방연쇄효과 대)	1

· 생산유발 계수(생산유발계수)의 적용대상 : 경상남도 지역산업연계형 사업(경남연구청, 2020), 동(표 3-30) '경남도 권·후방 연권효과'의 산업유형

14. 가점요소(최대 4점)

평가척도	점수(최대 4점)
지역특성화인증 투자	2점
권역발전허위지역 투자	2점
지역혁신중추발전지 투자	2점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2점
ESG인증기업	2점
소재 부품 장비 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	2점
수소전력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2점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지침기준(산업총상차원부고시), 별표 5 (지역특성화인증에 해당하는 인증)
 - 벤처기업확인기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확인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로 확인
 - E008연구개발유형(연구개발) : 200기업 인증서, 로 확인
 - 산업총상차원부정당으로부터 발급받은 「소재·부품·장비 혁신전략기술훈원서」로 확인
 - 산업총상차원부정당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소전력기업확인서」로 확인
 - 산업총상차원부정당이 공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증확인서」로 확인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수소전력기업,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각 1점 중복 불가

현		행		개정안					
[별표 2의3] <신설 2022.12.29.>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별표 2의3] <개정 2024. .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억원)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비고		지원한도액 *도바시군비 분담률 적용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30	투자금액 600억원 미만 해당		50억원	(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투자금액이 6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60명 이상		35	투자금액 700억원 미만 해당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2.5%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7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7%	56	투자금액 800억원 미만 해당		70억원	(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투자금액이 8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80명 이상		70	투자금액 1,000억원 미만 해당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2.5%	부지 매입비 ×2.5%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10%	100			100억원	(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5%	부지 매입비 ×5%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	설비 투자금액 ×2.5%	부지 매입비 ×2.5%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관 련 법 규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 산업”이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을 말한다.
2.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지역의 주된 산업 내 기업의 도산·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3.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지역의 주된 산업의 침체로 인하여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지역으로서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 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라야 한다.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통계청장은 효율적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분류를 사용하여 행정자료를 작성·취득·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통계청장은 표준분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표준분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부 고시)」을 말한다.
11.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
12.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나.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4.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15.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 한도액은 별표 6과 같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5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2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10명 이상의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10명을 초과한 1명당 월 100만원까지 12개월의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에 별지 제1

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8조(설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 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한은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하는 설비가액의 10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2의3과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과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

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제 제6조의3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단,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금액과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부터 1년 이내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제17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2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도내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신설·증설 기업지원)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또는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영위할 것. 다만, 부동산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하고, 건설업이 포함된 기업이라도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3의2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별표 3의3과 같이 하며, 기업당 3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30퍼센트는 제24조 및 별표 3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기금용자 절차 등) 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자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

2. 용자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업, 물류창고업과 도지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용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용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용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용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4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2.5점) 이상이고 재무건전성(평균매출액, 상시고용인원, 기업신용등급, 총자산 증가율, 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를 일컫는다) 평가 점수의 합이 35점(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27.5점) 이상인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용자를 신청한 시장·군수 및 운용 규정에 따라 기금 용자 업무를 위탁받은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알려야 한다.

⑤ 용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신청일은 시장·군수의 보조금 또는 용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 및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선행투자 정산 결과 투자금액 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사후관리기간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이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투자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이 규칙의 금지·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3년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이 규칙 제11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도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의2(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도지사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가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하되,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담보 확보는 운용 규정을 따른다.

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도 또는 시·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시·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⑥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 지연이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의2 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 보조금 신청서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사업등록일			공사 착공일
사업의 종류(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명)	기존 고용인원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계(①+②+③+④)							
토지구입비(①)							
건축비(②)							
기반시설설치비(③)							
기 타 (④)							
보조금 신청액		천원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투자내역서 1부(투자협약 당시 사업계획서 포함) 2. 투자 후 이행 각서 각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1부 4. 투자증명 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서 등) 1부 5. 투자증명 사진(건축 및 시설장비 등) 1부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건축물 관리대장 1부 4.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